■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24. 3. 22.>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앞쪽)

1.신고인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전화번호			
③ 상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대표자성명		⑥ 신고인유형구분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부분소유중간모기업
⑦ 사업장 소재지					
⑧ 사업연도	. . . ~ . . .	⑨ 수시부과기간	. . . ~ . . .		

2.신고 기본사항

⑩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 3. 기한후신고 4. 경정청구	⑪ 최종모기업 정보	⑫ 상호	
			⑬ 납세자번호(TIN)	
			⑭ 소재지국(코드)	

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요약표

⑮ 소재지국 (국가코드)	⑯ 하위그룹유형	⑰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상호	⑱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이 있는 국가	⑲ 적용면제 또는 제외 여부 사유 (항목 선택)	⑳ 실효세율	㉑ 실질기반제외 소득차감 후 추가세액 발생 여부	㉒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㉓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합 계								

구 분	글로벌최저한세
㉔ 추가세액배분액	
㉕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㉖ 가산세액	
㉗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 (㉔ - ㉕ + ㉖)	
㉘ 분납할추가세액배분액	
㉙ 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 (㉗ - ㉘)	

㉚ 조정반번호		㉜ 조정자	성명			
㉛ 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㉝ 예입처	은행 (본)지점	㉞ 예금종류	예금	㉟ 계좌번호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명)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고 안 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2024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전화번호란, ③상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성명란 및 ⑦주소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신고인유형구분란은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신고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⑧사업연도란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은 수시부과기간란을 적지 않습니다.
5. ⑩ 신고구분: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6. ⑪~⑭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⑫상호, ⑬납세자번호(TIN), ⑭소재지국(코드)를 작성합니다.
7. ⑮ 다국적기업그룹에 구성기업이 있거나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8. ⑯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②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9. 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③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0. ⑱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④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1. ⑲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⑤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2. ⑳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⑥의 사항을 구간[(a)~(m)]의 선택지가 아닌 실제값을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⑤)
13. ㉑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⑦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14. ㉒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⑧의 사항을 구간선택[(a)~(i)] 선택지가 아닌 실제값을 작성합니다.(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⑤)
15. ㉓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4.⑨의 사항을 구간선택[(a)~(i)] 선택지가 아닌 실제값을 작성합니다.(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⑥)
16. ㉔ 추가세액배분액: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상 구성기업별로 산출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의 ⑩과 ⑰의 총합계 금액과 동일합니다.
17. ㉕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18. ㉖ 가산세액: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상 가산세액을 작성합니다.
19. ㉗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 ㉔의 금액에서 ㉕의 금액을 차감하고 ㉖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20. ㉘ 분납할추가세액배분액: ㉗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21. ㉙ 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 ㉘의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추가세액배분액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22. ㉚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구성기업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작성합니다.
23. ㉛ 조정자관리번호, ㉜조정자란: 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 조정자의 것을 작성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1] <신설 2024. 3. 22.> (앞쪽)

사업 연도	. . . ~ .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신고인	
			사업자 등록번호	

1. 신고대상 저율과세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

① 구분		저율과세국가명1 (소속구성기업수)	저율과세국가명2 (소속구성기업수)	저율과세국가명3 (소속구성기업수)	. . .	합계
저율과세국가	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③ 조정대상조세					
	④ 실효세율					
	⑤ 실질기반제외소득					
	⑥ 초과이익 (② - ⑤)					
	⑦ 추가세액비율(15%-④)					
	⑧ 당기추가세액가산액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⑩ 추가세액 (⑥X⑦+⑧-⑨)					

2. 신고대상 저율과세구성기업별 소득산입비율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저율과세구성기업	⑪ 저율과세구성기업구분	저율과세구성기업1 (TIN)	저율과세구성기업2 (TIN)	소계	저율과세구성기업3 (TIN)	저율과세구성기업4 (TIN)	소계	저율과세구성기업5 (TIN)	저율과세구성기업6 (TIN)	소계		합계
	⑫ 저율과세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⑬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											
	⑭ 소득산입비율											
	⑮ 차감전추가세액 배분액 (⑬ X ⑭)											
	⑯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세액배분액 차감세액											
	⑰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배분액 (⑮-⑯)											

3. 가산세액 계산

⑱ 구분		⑲ 계산기준	⑳ 기준 금액	㉑ 가산세율	㉒ 코드	㉓ 가산세액
㉔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역외거래의 경우)		60(30)/100	80	'15.1.1.개시
㉕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역외거래의 경우)		60/100	81	'15.1.1.개시
㉖납부지연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1. ①~⑩: 제2호에 따른 과세구성기업별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소재지국별 추가세배분액(「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4/14) 3.3.1 추가세액」)계산만으로 간이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2. ②~⑩: 추가세액 계산의 각 단계별 산출 결과를 소재지국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⑪~⑰: 제1호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고, 저율과세구성기업별 추가세액 배분을 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4/14) 3.4.1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4. ⑫ 저율과세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을 작성합니다.
5. ⑬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 저율과세구성기업별 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6. ⑭ 소득산입비율: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신고인의 소득산입비율을 작성합니다.
7. ⑮ 차감전추가세액배분액: ⑬의 금액에 ⑭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⑯ 감세액: ⑮의 금액에 대해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⑰ 추가세액배분액: ⑮의 금액에서 ⑯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㉔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로 구분되며 무신고납부세액에 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㉕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의 경우에는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의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㉖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합니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